

『구미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현행 규정의 일부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, 일부조항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내용·체계를 재정비하고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,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 지원시책심의권을 부여 민간위원(외국인 주민포함)참여확대 등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 :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로 변경
- 『외국인주민』 용어 반영(안 제2조)
 - 거주외국인의 경우,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
 - 외국인주민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

○ 외국인 지원범위의 확대(안 제6조)

- 지원대상에 외국인·외국투자기업 사업 활동 지원 추가

○ 『구미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』 기능강화 (안 제7조~안 제9조)

- 동 위원회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능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
- 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심의 규정 신설
- 『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』로 명칭 변경,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권부여, 민간위원(외국인주민포함) 과반수참여 의무화 등 역할강화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○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
○ 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(안)일부개정안 통보
도 자치행정과-18439(2010. 09. 07)호

5. 검토의견

○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
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
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

○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국적 미취득자
외에 국적취득자와 그 자녀도 포함시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
제5조(지원대상)의 내용 불일치를 조정하였으며

- “외국인근로자 귀국정착프로그램 개발 운영”을 삭제하고, “외국인·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지원”으로 변경하여 외국인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
- 『구미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』의 기능을 강화하여 『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』로 명칭 변경하였고,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기능에서 심의권부여 및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지원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